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5월 26일

회 사 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순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전 화) 1588-0100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부장 (성 명) 이우열
(전 화) 02-3011-332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정기)

1. 일 시 : 2009년 6월 12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42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60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행사 방법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정국 (출석률: 87.5%)	엄홍렬 (출석률: 100%)	임진부 (출석률: 100%)	최중찬 (출석률: 75%)
			찬 반 여부			
1	2008.04.30	제1호 : 제4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	2008.05.17	제1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2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3	2008.06.12	제1호 : 리스크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2호 : 제42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4	2008.07.30	제1호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동부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 LA 지정 설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 하와이 지정 자본 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 동부캐피탈(주) CP할인 대출연장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08.09.17	제1호 : 동부생명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08.12.23 ~24	제1호 : 동부금융센터 건물 지분 취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동부제철 보유 동부생명 주식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 은행 지분 보증장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09.01.28	제1호 : 동부하이텍 자구계획 이행 약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09.03.25	제1호 : FY2009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동부ON(주)와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 갱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 동부자동차보험 손해사정(주)와의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 동부생명 후순위 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임진부 김정국	2008.5.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가결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	가결
			- FY2007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FY2008 감사계획 보고	가결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2008.12.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리스크관리 위원회	최종찬 엄홍렬	2008.05.23	- FY 08시장리스크 통합한도 설정	가결
			- FY 08ALM관리기준 설정	가결
			- FY 08신용리스크 한도관리기준 설정	가결
			- FY07년 하반기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자체평가 결과보고	가결
			- 운용실적 Review(FY 08.3월)	가결
		2008.06.27	- FY 08재보험 특약 운영	가결
		2008.09.17	- 시장리스크 한도 변경(안)	가결
2008.10.13	- 시장리스크 한도 변경(안)	가결		
	- '08년 상반기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자체평가 결과보고	가결		
경영위원회	엄홍렬	2008.08.29	제1호 : 지점 이전의 건 (통영지점)	가결
		2008.10.24	제1호 : 보상서비스센터 이전의 건 (강남보상서비스센터)	가결
			제2호 : 지점 명칭 변경의 건(천안지점→충남지점)	가결
		2008.12.22	제1호 : 일중차월 기일 갱신의 건 (하나은행)	가결
			제2호 : 지점 이전의 건 (성남지점)	가결
		2008.12.31	제1호 :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가결
		2009.02.27	제1호 : 지배인 선임 및 해임의 건	가결
2009.03.20	제1호 :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신한은행)	가결		
	2009.03.31	제1호 : 지점 신설 등의 건	가결	
제2호 : 지배인 선임 및 해임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	최종찬 김정국 임진부	2008.05.15	제1호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엄홍렬 사외이사)	가결
		2008.07.30	제1호 :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찬 위원장)	가결

주) 1. 경영위원회 위원인 장기제 이사 사임(2008.7.7)에 따라 제42기 제4차 이사회(2008.7.30 개최)에서 엄홍렬 사외이사를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 (엄홍렬 사외이사 선임 후 개최된 제2차 경영위원회 사항부터 작성함)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장기제 이사 사임(2008.7.7)에 따라 제42기 제4차 이사회(2008.7.30 개최)에서 임진부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제42기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함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4	6,000,000,000	98,777,640	24,694,410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손보업계에는 국내 손보사 16개, 외국 손보사 14개를 포함하여 모두 30개 손해보험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보사는 12개의 원수보험사, 2개의 자동차보험 전업사, 그리고 재보험사와 보증보험사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업계 경영실적 : 14개 국내 원수사 기준 추정치)

FY'08년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34조 7,89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대비 약 10.6% 성장하였습니다. 보종별로는 장기보험이 16.4% 성장하여 지속적인 신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11.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경기침체로 인한 신차등록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약 1.2%의 성장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원수보험료의 보종별 매출비중은 자동차보험이 31.4%(전년비 2.9%p감소), 장기보험이 57.7%(전년비 2.9%p 증가), 일반보험이 10.9%(전년비 0.1%p 증가)로, 장기보험의 매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형성장 둔화, 금융의 융합화, 대형화 현상의 가속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보험산업 전반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통합법 시행('09.2), 보험업법 개정, 금융상품전문판매업제도(2010 예정) 도입 등 금융산업 권역간 제도적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직관사의 종합보험사로의 전환, GA 등 신규 독립채널의 시장 영향력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손보업계는 타금융권과의 무한경쟁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체질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FY'08 사업연도에 5조1,28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대비 9.0%의 매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전년비 0.8%, 장기보험이 13.5%, 일반보험이 7.0%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2,315억원으로 전년대비 14.6%가 감소하였으며, 비상위험준비금 36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총자산은 8조9,52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은 8,402억원으로 전년대비 3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下에서도 적절한 자본 수준, 뛰어난 보험영업 실적, 안정적인 시장위치, 적절한 투자영업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M.Best로부터 'A-'에서 한 등급 상향된 '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초우량 보험회사'를 천명하고 임직원 모두가 고객만족경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융감독원 주관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민원평가 1등급」,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CMS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01년 위험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08.4월 자동차보험에서는 긴급출동, 현장출동, 점검서비스에 대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ISO9001 인증 획득, 2008.10월 방재/보험컨설팅 분야에서 ISO14001 인증 획득, 2009.2월 영국 표준협회(BSI)로부터 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획득하는 등, 위험관리 및 보험컨설팅 분야에서 국제적인 컨설팅서비스 수준을 확인받았습니다.

당사는 2009년 차별적인 고객가치 창출, 이익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작금의 경영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영업력이나 수익구조면에서 그 수준을 한단계 Level up 시켜나감으로써, 동부화재의 미래가치를 더 높이고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① 최근 3사업연도 당사 시장점유율

구분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장기보험	합계
FY'08	13.5	12.6	15.9	14.7
FY'07	13.5	12.9	16.3	15.0
FY'06	13.7	12.2	16.2	14.9

② 당해연도 주요 경쟁사 시장점유율

구분	당사	삼성	현대	LIG
시장점유율	14.7	28.0	15.9	13.2

* 주 : 국내 14개 원수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FY'08 시장점유율은 추정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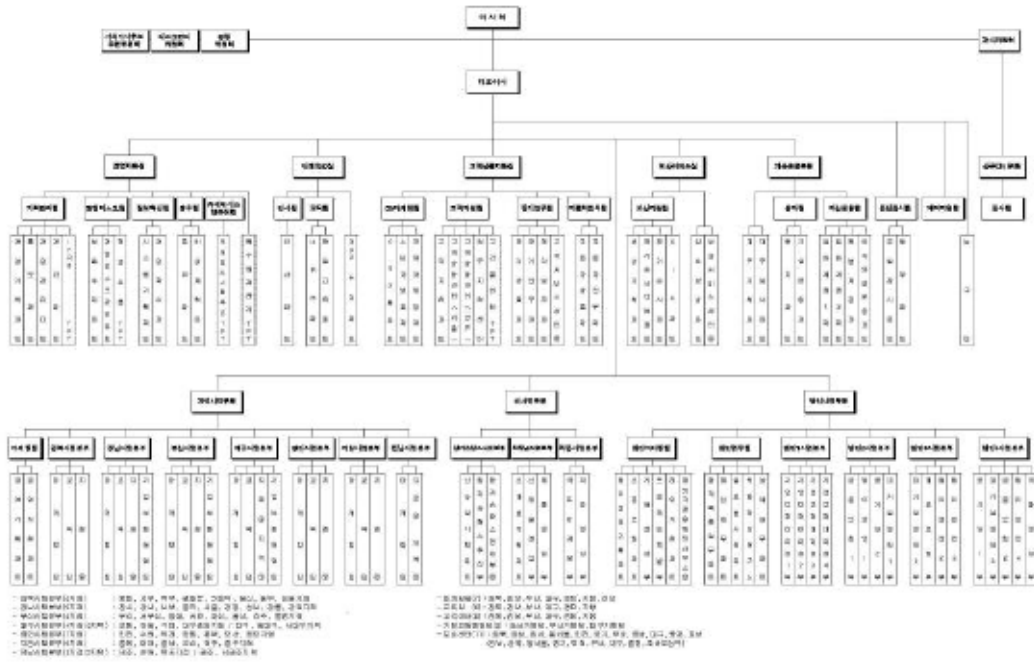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가. 업계의 현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당사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42 기 2009. 3. 31 현재

제 41 기 2008. 3.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현금및예치금	180,804,985,822	192,351,086,860
II. 유가증권	4,721,612,808,567	4,481,171,589,671
III. 대출채권	1,970,626,250,020	1,583,481,857,596
IV. 유형자산	350,919,636,252	296,407,727,507
V. 기타자산	1,458,354,714,539	1,249,384,406,440
VI. 특별계정자산	270,593,783,010	303,559,023,738
<자산 총계>	8,952,912,178,210	8,106,355,691,812
I. 책임준비금	6,972,121,368,580	6,028,040,263,627
II. 비상위험준비금	372,191,345,547	335,734,330,920
III. 차입부채	15,000,000,000	-
IV. 기타부채	458,350,567,332	594,390,462,671
V. 특별계정부채	295,080,813,077	308,351,262,786
<부채 총계>	8,112,744,094,536	7,266,516,320,004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자본조정	(-)29,655,475,800	(-)29,655,475,8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5,236,356,730	(-)33,140,202,724
이익잉여금	1,021,747,134,686	829,322,268,814
<자본 총계>	840,168,083,674	839,839,371,808
<부채와 자본 총계>	8,952,912,178,210	8,106,355,691,812

주) '(-)'는 부의 수치임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42 기 (2008. 4. 1 부터 2009. 3. 31 까지)

제 41 기 (2007. 4. 1 부터 2008. 3.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영업수익	6,078,491,071,022	5,578,489,606,747
II. 영업비용	5,791,708,925,604	5,214,084,328,084
III. 영업이익	286,782,145,418	364,405,278,663
IV. 영업외수익	16,355,778,977	17,185,917,494
V. 영업외비용	6,135,896,445	8,344,771,21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7,002,027,950	373,246,424,942
VII. 법인세비용	65,494,410,546	102,090,941,689
VIII. 당기순이익	231,507,617,404	271,155,483,253
IX. 주당순이익	3,657	4,28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2 기 (2008. 4. 1 부터 2009. 3. 31 까지)

제 41 기 (2007. 4. 1 부터 2008. 3.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48,653,206,387	278,028,340,51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249,336,515	6,005,161,542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등	(-)1,103,747,532	867,695,720
3. 당기순이익	231,507,617,404	271,155,483,253
II. 임의적립금이입액	5,333,333,333	2,000,0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43,729,904,000	261,779,004,000
1. 이익준비금	750,900,000	3,800,000,000
2. 배당금	37,979,004,000	37,979,004,000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 당기 : 600원		
- 전기 : 600원		
3. 임의적립금	205,000,000,000	220,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256,635,720	18,249,336,515

주) '(-)'는 부의 수치임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p> <p>1. 자동차보험 2. 화재보험 3. 해상보험 4. 특종보험 5. 장기손해보험 6. 개인연금손해보험 7. 퇴직보험 8. 부동산권리보험 9. 퇴직연금보험 10. 기타 손해보험 11. 전 각종보험의 재보험</p> <p>② 손해공제(보증공제 제외)의 재공제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공제료의 징수 및</p>	<p>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제></p> <p><삭제></p>	<p>- 포괄적 사업목적 기재방식으로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공제금의 지급</p> <p>③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재산운용</p> <p>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p> <p>2.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그 이용</p> <p>3. 대출 및 어음의 할인</p> <p>4.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p> <p>5.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신탁</p> <p>6. 기타 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p> <p>④ 기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사업</p> <p><신설></p>	<p><삭제></p> <p><삭제></p> <p>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p> <p>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p> <p>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 외의 업무</p>	
<p>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p> <p>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p>	<p>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p> <p>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상법상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p>	<p>- 지점 정의 명확화 및 현지법인 설립 등 대비</p>
<p>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p>	<p>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p>	<p>- 조항 오류의 수정</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생략) ③ 제②항 2호 및 5호의 방식</p>	<p>제8조(신주인수권) ② (좌동)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 제②항 2호 및 5호의 방식</p>	<p>- 근거법률의 변경 - 근거법률의 변경 - 근거법률의 변경 - 근거법률의 변경 - 근거법률의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의 경우 회사는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1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고,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p>	<p>의 경우 회사는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1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고,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p>	
<p>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⑩ (생략)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3.(생략)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p>	<p>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⑩ (현행과 같음) ⑪ (좌동)</p> <p>1~3.(현행과 같음)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관련법규 위반에</p>	<p>- 근거법률의 변경</p> <p>- 용어 및 근거법률의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p> <p>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추가).</p>	<p>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p> <p>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대한 상법시행령 개정 반영</p>
<p>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 근거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용어 변경</p>
<p>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p>	<p>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p>	<p>- 공고방법을 일간신문 외에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 반영</p> <p>- 근거 법률의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인 그 밖의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1.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p> <p>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사항</p> <p>3.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p>	<p>인 그 밖의 상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통지·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대한 상법 개정 반영</p>
<p>제2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제2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 용어 명확화</p>
<p>제24조 (이사의 수)</p>	<p>제24조 (이사의 수)</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 규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p>	<p>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상법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p>	<p>- 근거 법률의 변경</p>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규정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 근거 법률의 변경</p>
<p>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통합법 제165조의3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제165조의3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 근거 법률의 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국	1947.05.1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정남	1952.10.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국	보고경제연구원 회장	- 1996.12 :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1997.11 :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 1998.03 :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없음
김정남	동부화재 개인영업부문장 부사장	- 2003.9 : 동부화재 개인영업 총괄 상무 - 2004.4 : 동부화재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 - 2005.4 : 동부화재 신사업부문총괄 부사장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국	1947.05.1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이사회에서 추천함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국	보고경제연구원 회장	- 1996.12 :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1997.11 :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 1998.03 :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4)	7(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

주) 상기 전기 이사수는 2008년 7월 7일에 사임한 장기제 사내이사가 포함된 수치임